

제2절 화재예방대책 (전사적 공통사항)

1. 사항별 업무

가. 분야별 임무

분 야	임 무
안전계획처	전사적 화재예방 대책 수립 및 특별점검 등 기획
경영지원본부	화재보험관리, 본사 및 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기획조정실	화재예방을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고객서비스본부	277개역 소방안전관리, 상가 화재예방 관리
차량본부	11개 차량기지 및 전동차 소방안전관리
승무본부	7개 별관 소방안전관리
기술본부	전기,정보통신,궤도,신호,기계,전자,토목,건축시설물 화재예방 관리 및 6개 별관 소방안전관리
제1,2종합관제센터	관제설비 화재예방 관리
9호선운영부문	9호선 13개역 및 전동차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 상황발생시 종합관제센터 및 119 등에 보고 철저(선보고 후조치)

나. 화재취약 분야별 예방대책

부 서	예 방 대 책
고객안전처	역사 화재예방대책, 역사특화 테마 사업 조성물 방염대책
차량계획처, 차량정비처	차량기지·전동차 화재예방대책
고객안전처, 부대사업처, 서비스안전지원사업소	상가 화재예방대책
부대사업처	소송관련 상가 화재예방대책
궤도처	레일연마 작업 장소 화재예방대책
궤도처,토목처	선로변·고가 하부 화재예방대책
건축처	승강장 노반 흡음재 부착개소 화재예방대책
정보통신처, 전기처 등	전파기지국 등 무인 기능실 화재예방대책
전기처	전기화재 예방대책
총무처	본사 화재예방대책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화재예방대책
제1,2종합관제센터	관제설비 화재예방대책
구내식당 관리부서	구내식당 화재예방대책
가스 사용시설 관리부서	가스 사용시설 화재예방대책
공사시행부서	공사현장 화재예방대책
해당부서	인화성 물질 등 보관·취급·반입 장소 화재예방대책

다. 사항별 시행 주관부서

업무		주관 부서	
자체 소방계획 수립·시행		소방안전관리자·각 소속장	
소방시설 물 점검	법정	외관점검(월간)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작동기능점검	기계1,2사업소, 기술처(9호선운영부문)
	자체	화재예방점검	소속장, 소방안전관리자
		지도점검	안전지도처, 사안별 본사 주무부서
		정기점검	시설 관리부서, 기술처(9호선운영부문)
	겨울철특별점검	소속장, 소방안전관리자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교육		소속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	소방안전관리자, 각 소속장	
	유지보수관리	기계1,2사업소, 시설 관리부서, 기술처(9호선운영부문)	
화기취급장소 지도점검 및 단속, 인화물질(위험물) 반입, 취급단속		소방안전관리자, 화기단속책임자, 각 소속장	
대형 화재예방을 위한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		사안별 주무부서	

라. 화재예방 및 소방점검관련 시설사용장의 자체조치

- 소방시설물 점검 후 이상 발견시 : 기술센터(기계관리소), 기술처(9호선운영부문)에 보수요청
- 역장은 역사내 소방시설물에 대하여 순회점검 시 이상개소를 기술센터(기계관리소), 기술처(9호선운영부문)에 신고 후 그 결과를 확인
- 본사 및 인재개발원, 별관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속장이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 후 이상발견시 시설위탁업체 자체조치
- 차량기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속장이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 후 이상발견시 관할 부서에 신고 후 그 결과를 확인
- 관할 기능실내 하론 및 CO2 소화설비, 유도등 등 외관상태는 담당부서(화기단속책임자)에서 점검하고 관련부서[소방안전관리자, 기술센터, 기술처(9호선운영부문)]에 신고 후 그 결과를 확인
- 관할 기능실 내 소화기 등의 외관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시 바로조치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통보

마. 화재(또는 연기발생)시 소화의무 및 보고

- 화재 시 소방안전관리자 및 각 소속장은 화재 현장에 있는 고객을 대피시키고 초기화재 진화에 노력해야 한다.
- 화재 시 소방안전관리자 및 각 소속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보고계통에 따라 우선 보고 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의거 조치)

2. 추진계획

가. 자체 소방계획(서) 수립 및 시행(2년간 보관)

- 기간 : '19. 1. 1. ~ 12. 31.
- 시행 지시책임자 : 각 소속장
- 작성자 : 소방안전관리자
- 대상 : 290개역, 11개 차량기지, 본사, 인재개발원, 별관
- 소방계획(서)에 기재할 내용(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대상물에 설치한 소방·방화시설·전기·가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방화·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사용된 것) 및 방염물품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피난 보조 임무 포함)에 관한 사항
 -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1) 화재예방점검

- 주기 : 월 1회 이상(매월 '안전점검의 날')

- 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 및 화기단속책임자
 - 대상
 - 전기시설, 유류저장·취급 장소 등 화재우려 취약개소
 - 임대상가, 청원시설, 식당, 용역시설, 기능실 등 각종 소방시설
 - 방법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체 화재예방 점검
- 2) 소방설비 정기점검
- 주기 :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등 계획점검
 - 점검자 : 설비담당부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 3) 종합정밀점검(법정)
- 주기 :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위탁사), 확인자 : 소방안전관리자
 - 대상 : 역, 기지, 본사, 인재개발원, 별관
 - 방법 : 법정점검표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한 시행
 - ※ 근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종합정밀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2년간 보관) 및 점검실명제 준수 철저
- 4) 작동기능점검(법정)
- 주기 : 연 1회 이상(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 종합정밀점검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위탁사), 확인자 : 소방안전관리자
 - 대상 : 역, 기지, 본사, 인재개발원, 별관
 - 방법 : 법정점검표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한 시행
 - ※ 근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작동기능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2년간 보관) 및 점검실명제 준수 철저
- 5) 외관점검(법정 월간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주관
- 주기 : 월 1회(매월 '안전점검의 날' 활용)
 - 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 방법 : 법정점검표인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의한 시행
 - ※ 소방시설 외관점검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 6) 공기호흡기 배치 및 관리(법정)
- 배치기준(법적기준)
 - 지하역사 : 층별 공기호흡기 2대 이상 배치

- 점검대상 : 역사 및 기술분야 기능실 공기호흡기 유지관리 부서
 - 용기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
- 법규 세부내용

구분	관 련 법	법 규 내 용	법적제재
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제4조(설치기준)	-지하역사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	200만원 과태료
용기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9조 (용기 등의 재검사)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0년 이하 5년 마다, 10년 초과 3년마다 검사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경과 시 폐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충전주기 : 년 1회(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 준용)
- 위생검사 및 세척 : 관리(책임)부서에서 필요시 적용(사용빈도 등 고려)

다.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1) 소화기 관리

- 점검주기 : 매월 1회 이상 점검
- 점 검 자 : 소방안전관리자, 화기단속책임자(각 소속 직원)
- 점검대상 : 역사, 기지, 별관, 본사, 인재개발원, 전동차 등
- 관리방법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경과 시 교체
 - 소화기 식별표시·점검표 부착
 - 소화기 분말응고 상태 확인, 외관상태 점검, 점검표 기록유지

2) 옥내(외) 소화전설비 관리

- 점검내용
 - 소화전 위치표시등 점등상태
 - 호스, 노즐 보관상태, 밸브 누수 여부 및 펌프 기능 이상유무
 - 소화전 사용 요령 숙지(소화전 외함 부착내용)

3) 스프링클러 및 연결송수관설비 관리

- 점검내용
 - 소화용수 확보 상태

- 연결송수구 설치상태 및 이상 유무
 - 배관 내 충수 및 압력 상태 확인
 - 알람밸브 및 게이트밸브 정상 상태
 - 배관 말단부 테스트밸브에 의한 기능상태 등
- 4) 하론 및 CO₂ 소화설비 관리
- 점검내용
 - 수신기, 감지기 외관 상태 및 동작상태 이상 유무
 - 용기 내 가스 충전 여부
- 5) 유도등 관리
- 점검내용
 - 유도등 상시전원, 예비전원 이상 유무 점검
 - 유도등 램프 점등상태 기능점검
 - 유도등 카바 변색 상태점검
 - 유도등 파손여부 등 외관점검
- 6)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리
- 점검내용
 - 수신반 상시전원 및 예비전원 이상 유무 점검
 - 수신반 동작, 도통시험 이상 유무 점검
 - 수신반 전압 지시상태 점검
 - 구역별 감지기 및 표시등 기능점검
 - 방송 연동장치 기능점검
- 7) 구호장비 관리
- 점검내용
 - 공기호흡기, 방독면, 비상조명등, 라이트라인 등 상태 이상유무
- 라. 소방훈련 및 화재예방 교육 강화
- 1) 자위소방대원 소방교육 및 훈련실시
- 대 상 : 역, 기지, 본사, 인재개발원, 현업동(별관)의 자위소방대원(상가 및 용역직원 등 포함)
 - 시행자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상 소방훈련의 경우), 소속장(재난 대비 화재훈련의 경우)
 - 시 기 : 연 2회 이상(그 중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 및 승객 대피 요령

- 소화기 취급요령
-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펌프 작동요령(직원)
- 화재수신반 점검 방법(직원)
- 용역직원 등 직원 아닌 자위소방대원의 화재 등 비상시 임무
- 현업 소속 실정에 맞는 화재대비 훈련(재난대비 화재훈련의 경우)
-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14조(소방훈련 및 교육)
-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 교육 및 훈련실시 결과보고 :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기록부에 기재

※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기록부는 소방계획서 별지양식으로서 법정양식이므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주의 (위반 시 과태로 200만원 이하)

※ 작성요령

- ‘훈련통제관’ 란 : 소방기관의 합동훈련 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
- ‘교 관’ 란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 시 담당 소방공무원을 기재
-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란 : 훈련 및 교육의 일시, 장소, 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

2) 외부 위탁 소방교육 및 훈련

- 대 상 : 전 직원
- 기 간 : '19. 1. ~ 12.(서울소방학교 교육일정 협의)
- 교육인원 : 305명 내외
- 교육기관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 교육내용
 - 화재예방 이론 및 실습 교육, 화재 초기 행동요령 이론 및 실습 교육
 - 소방시설 사용법 이론 및 실습 교육,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교육
 - 화재 시 인명구조 및 대피유도 이론 및 실습 교육
 - 피난훈련 실습 교육, 연기 및 로프 탈출 훈련 실습 교육

3) 화재예방 홍보활동 실시

- 시행부서 : 각 주관부서
- 기 간 : 연중실시
- 대 상 : 역, 기지, 본사, 인재개발원, 현업동(별관), 행선안내게시기, 전동차 내부 등

○ 내 용

- 소방표어 및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부착 게시
- 역사 및 전동차 화재예방 홍보방송 실시
- 역사 및 전동차 화재발생시 승객 대피요령 등 홍보방송 실시
- 기능실 흡연금지, 화재예방 직원교육 실시 등
-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전 직원 교육 및 홍보

4) 부서별 화재예방 홍보활동 실시사항

홍보 이용물		홍보내용	비고
동영상 표출	차내 행선안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대비 비상탈출 • 화재 초기대응 요령 등 	홍보실
	승강장 열차행선 안내게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조심, 화재예방 문구홍보 • 화재, 테러 등 관련 신고 전화 	
방송	전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홍보 • 출입문고장방지 홍보 • 출입문 주의 	승무시스템처
포스터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승객행동 안내 	고객안전처
기타	역 이용안내도 및 비상대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시 대피경로 표시 	건축처
	소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위치표시 	고객안전처
	고객불편 신고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연락 전화번호 	
시민참여 합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로 인한 열차화재 대응합동, 소방 시범 합동 훈련 시 이용승객 참여로 대피요령 등 • 직접체험(종합방재훈련) 	고객안전처 승무운영처	
디지털 시민안전체 험관 및 안전홍보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이용시민 및 직원들이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VR) • 지하철 주요 사고유형 전시 	도시철도ENG (안전계획처)	

마. 화기단속책임자의 화재예방 책임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 (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상공간 : 구획된 모든 사무실 및 창고 등 무인시설 공간

구분	화기단속책임자(정)	책임공간
벽·칸막이 등에 의해 구획된 각각의 방·실	해당 소속의 장 (해당 방·실 사용책임자)	·본사, 별관, 차량기지 및 각 소속별 사무실, 창고 등 ·벽과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하여 화기단속책임자 지정을 받은 공간
위탁업체 공간	위탁업체 소장	·용역사 사무실, 용역창고, 용역원 침실, 대기실 등
무인기능실	관리소장	·변전소, 전기실, 신호·통신기계실, 환기실, 펌프실, UPS실, 물탱크실 등 역사 및 현업 내 각 기능실
구내 식당	영양사	·역, 기지, 인재개발원, 별관, 본사식당 내 구내식당의 홀, 주방, 영영사실 등
상가 점포 등	임차인	·임대상가 점포, 광고시설물 중 구획된 공간 등

○ 화기단속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

- 지정권자 : 소방안전관리자
- 운영방법 :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공간에 대하여 화기단속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소방계획서에 명시하고 당해공간에 대하여 화재예방책임이 있음을 통보
- 화기단속책임자의 임무
 -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을 위한 조치
 - 당해 실 안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 당해 실 관련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
- 화기단속책임자 지정표지 부착
 - 표 지 : 가로 10cm × 세로 6cm 정도(권장)의 크기로 실명이 아닌 아래예시와 같이 지정 기재
 - 부착위치 : 출입문 외측문 상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
 - 예 시

화기단속책임자	
정	○○관리소장
부	○○부관리소장

<역사, 기지, 별관 내 각 기술분야 기능실>

화기단속책임자	
정	임 차 인
부	점유보조자 또는 현장대리인

<상가 각 점포>

화기단속책임자	
정	○ ○ 소 장
부	부 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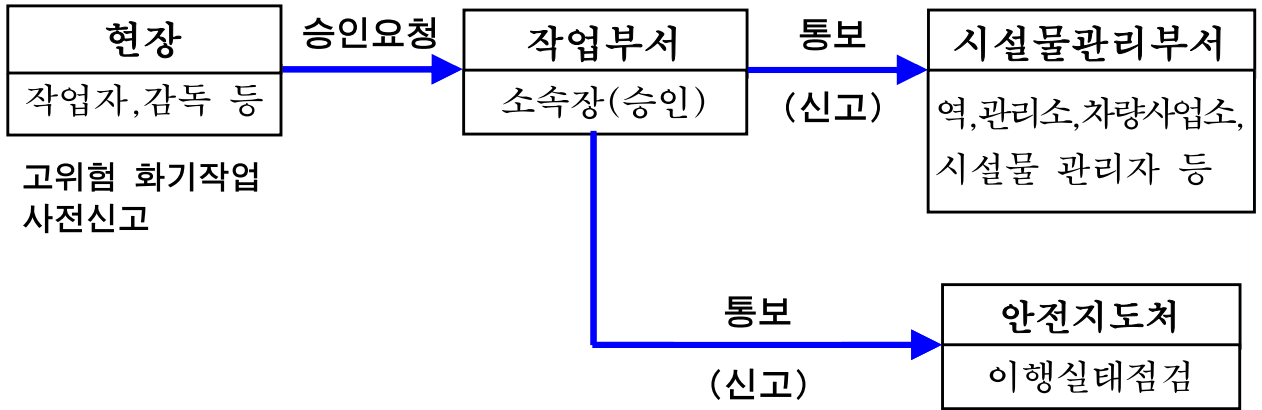
<위탁사무실 및 위탁사 관리 공간>

화기단속책임자	
정	영 양 사
부	조 리 원

<구내식당 각 방·실>

바.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제 준수

○ 업무 흐름도



○ 신고대상

- (레일)연마, 산소절단, 용접, 연기발생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주요 작업

○ 신고방법

- 신고부서는 작업 시행 1일전까지 사전신고서를 작성, 담당부서장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역, 관리소, 차량사업소, 안전지도처 송부(문서)
- 분야별 신고대상 작업, 신고자, 승인·통보
- 작업장소가 터널 등 역과 역사이의 구간인 경우 → 가장 인접(출입) 역에 통보
- 연중 계속적·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의 경우 → 월 단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괄 신청
- 부득이 일정변경 및 긴급작업의 경우 → 부서장 사후 추인
- 접수부서는 이례상황 발생 시 신고부서에 즉시 통보
- 경미한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 일상적 정비작업 및 안전장치가 갖춰진 용접장 내에서의 용접작업 등은 자체 재량으로 대상 제외
- 미신고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 (안전관리본부 화재예방 지도점검 시 이행실태 확인 점검)

○ 부서별 업무

구 분	업무내용
신고부서 (담당부서장)	- 화기작업 사전신고 및 신고기록유지, 실적관리 - 화재예방 대책 등 강구
접수부서 (역, 관리소, 차량사업소 등)	- 신고접수 - 화재예방점검 및 예방대책 확인
안전계획처	- 방침(계획) 수립
안전지도처	- 신고접수, 이행실태 확인

※ 9호선 2, 3단계는 9호선 종합관제센터(1단계 운영사)에 제출하는 관련 작업승인서로 대체

○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서

신고일시	신고자		
작업명	작업자 소속		
작업일자	작업예정시간		
작업장소	작업을 통보할 관련부서		
작업내용			
화재예방 조치사항			
작업자	외 명	감독자	
작업책임자 핸드폰	감독자핸드폰		

아. 공사장 화재예방대책

○ 화재취약성

- 지하철 관련 각종 공사현장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특성으로 각종 불안 전 요소 상존 우려

○ 대 상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모든 유지관리 등 작업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모든 개·보수 등 공사

○ 예방대책

- 기 간 : 각종 개·보수 작업 또는 공사 기간 내
- 점 검 자 : 소방안전관리자, 각 소속장, 공사감독
- 대 상 : 모든 공사

- 예방대책
 - 작업개시 전 화재예방교육 시행
 - 임시전력시설 (분전반, 콘센트 등) 화재요인 제거
 - 가스 또는 전기 용접 시 감시자 배치
 -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등 소화용구 비치
 - 공사장 창고, 사무실 등에 가연성 물질 보관 금지
 - 공사 중 반입한 가스통 등은 공사종료 후 반드시 역 외부로 반출
 - 안전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화재안전 책임부여 및 작업개시, 종료 후 이상 유무 확인
 - 용접, 가스절단 등 불꽃발생을 수반하는 주요 화기작업이 공정에 포함된 공사는 반드시 「화기작업사전신고제」에 의한 통보 준수
-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대상** :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 ▶ 연면적 3천㎡이상
 -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 ※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및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 ▶ 연면적 400㎡ 이상
 -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 ※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피난유도선
 -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 ※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사.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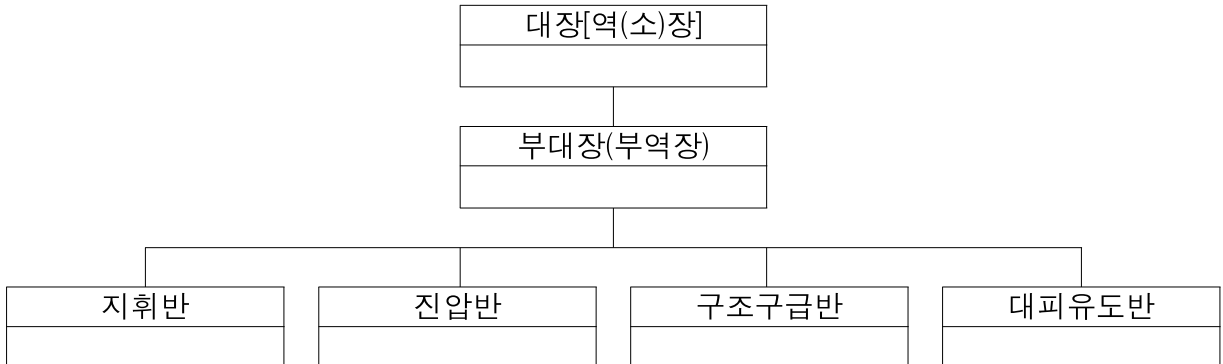
- 추진기간 : '19. 11. 15. ~ '20. 3. 15.
-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대상
 - 역, 기지, 본사, 인재개발원, 별관
 - 차량기지 유류탱크, 본선 모터카, 유류보관 장소
 - 전동차, 모타카 등 철도장비
 - 화재취약개소
- 사항별 시행주관 부서
 - 겨울철 안전대책(화재예방) 수립 및 안전점검 : 안전계획처
 - 소방시설기능유지 및 동파예방 : 소속장, 소방안전관리자
 - 분야별 취약개소 안전점검 및 단속
 - 역사, 기지, 본사, 별관, 인재개발원 : 역장, 소속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 전동차, 고가구조물 : 소속장
 - 유류보관창고 : 소속장,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취약개소 : 관련 책임부서의 장, 소방안전관리자
 - 겨울철 화재취약개소

구 분	겨울철 화재위험성
상 가	• 전열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위험
역사 내 광고판	• 누전 등에 의한 전기화재 위험
변전소	• 특고압 케이블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
환기구	• 행인 담배꽂초 투척에 의한 발화 위험
차량기지 울타리 가림막	• 행인 담배꽂초 투척 위험
쓰레기 보관창고	• 담배꽂초 불씨에 의한 쓰레기 연소 위험
신문가판대 등 청원전력시설물	• 미인가 전력사용에 따른 전기화재 위험
무인시설공간	• 상주인원 부재에 따른 위험 - 환기실, 전기실, 비품창고 등
심야 개방통로	• 노숙자, 취객 등에 의한 방화 위험
손소독기	• 인화성 에틸알콜 비치로 인한 방화 위험
불꽃발생 화기작업장	• 불꽃비산 착화 위험 - 용접, 절단, 레일연마 작업 등
철교 및 선로	• 차륜 스파크 발생, 도유기 절연불량 등
소송 진행 중인 상가	• 임차인 성실관리 기대곤란 위험성

- 겨울철 화재예방 점검
 - 점검자 : 소속별 자체점검
 - 점검기간
 - 1차 점검 : '19년 11월 중(세부기간 차후 시달예정)
 - 2차 점검 : '19년 12월 중(세부기간 차후 시달예정)
 - 3차 점검 : '20년 01월 중(세부기간 차후 시달예정)
 - ※ 기간 중 안전계획처 주관 (특별)합동점검

3.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

가. 조직도



나. 자위소방대 임무

구 분	임 무
대 장	· 자위소방대 총괄 지휘·운영
부대장	·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임무를 대행
지휘반	·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 ·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진압반	·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 화재진압
대피유도반	· 건물 내 거주자를 대피유도 (장애인·노약자의 피난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의 임무지정 포함) · 방화문 폐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구조구급반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후송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과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업무의 수행
-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화기취급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
- 실무(보수)교육 기준(선임지 변경자 포함)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이후 2년마다 1회
 - 다만 강습(자격취득) 또는 실무(보수)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최종교육 후 2년 이내 이수, 이후 2년마다 1회
- 실무교육 신청방법
 - 소방안전관리자가 개별적으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